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관리계획(약수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- 2015.7.22. 제5차 중구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원안가결)와 관련입니다.
-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(1996.6.13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53호(2009.11.19)로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65호(2014.10.23.)로 변경결정 고시된 『약수지구단위계획구역』 내 신당동 431-12외1(357-12, 공동개발지정)와 431-14호의 공동개발 권장을 해제하고 신당동 431-14와 431-15호 공동개발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사항은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제4항,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제68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,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○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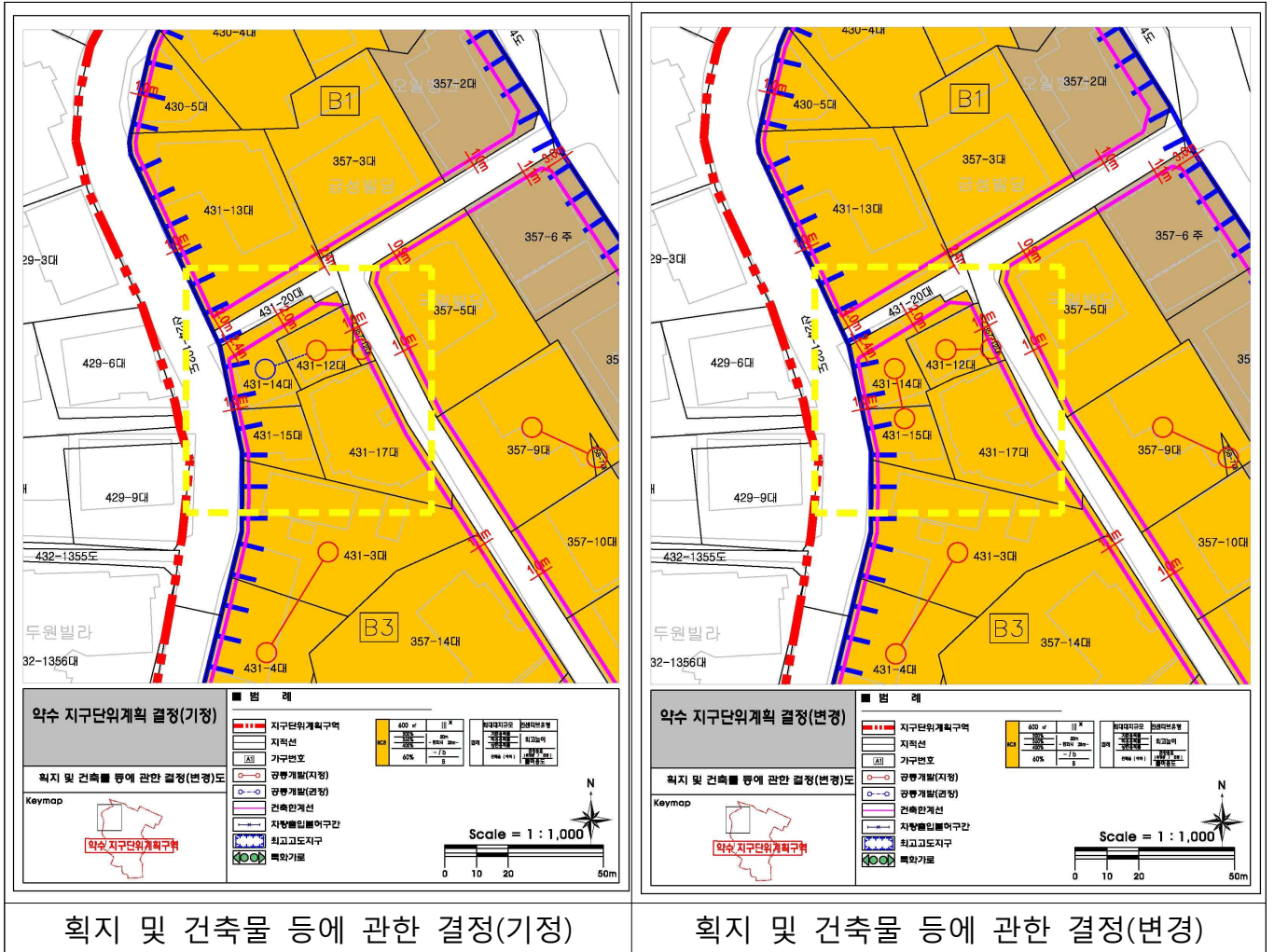
1)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구 번호	번호	면적	구역	필 지			비 고	
					위치		면적 (㎡)		
기정	B3	1	272	RC8	신당동	357-12	4.0	공동개발 지정	공동개발 권장
					신당동	431-12	96.0		
					신당동	431-14	172.0		
					신당동	431-15	122.0		
변경	B3	1	100	RC8	신당동	357-12	4.0	공동개발 지정	
					신당동	431-12	96.0		
		5	294	RC8	신당동	431-14	172.0	공동개발 지정	
					신당동	431-15	122.0		

2)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신당동 357-12, 431-12, 431-14, 431-14	신당동 431-12외1(357-12, 공동개발지정)와 431-14호의 공동개발 권장을 해제하고 신당동 431-14와 431-15호 공동개발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당동 431-14호와 431-15호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의사에 따라 공동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

3) 관계도면

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4) 고시방법 : 시보게재

5) 고시일자 : 2015.8.6.(목) 예정

6) 행정사항

- 시보게재의뢰 : 서울특별시(시민소통담당관)
- 변경결정통보 : 서울특별시(도시관리과), 중구청(건축과, 토지관리과), 주민제안자, 해당 토지소유자
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
주무관 **이원찬** 지역개발팀장 **이정일** 도심재생과장 **최영수** 도시관리국장 **이진형** 07/31

협조자 주무관 **이수정** 의회법제팀장 **이창하**

시행 도심재생과-8843 (2015.7.31) 접수 ()
우 100-701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 본관6층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
전화 3396-5786 /전송 02-3396-4342 / kokoriro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